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현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9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5일
발 의 자: 김현기 의원(1명)
찬 성 자: 고광민, 김영철, 김종길,
김태수, 박 석, 박승진,
옥재은, 이민석, 최진혁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의 취득과 주택의 건설·공급, 주거복지 사업 외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,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, 관광지 개발,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,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 이에 맞춰 개발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명에 명시하여 기관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거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,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관 명칭을 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’로 변경함(제명, 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조례의 목적에 ‘도시의 개발·정비, 토지’를, ‘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’를 명시함(안 제1조)
- 다. 부칙
 -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택지”를 “도시의 개발·정비, 토지”로, “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”을 “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”로,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명의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명의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본다.

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, 제8조제2항제1호,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각각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8조의3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8조의4제1항제5호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가목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

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제2호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“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39조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51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서울주택도시공사를”을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”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다목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전단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⑭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
⑮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8호라목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⑯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⑱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9호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34조제2항 중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</u> <u>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택지</u>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<u>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</u>를 설립하고,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경영의 기본원칙) <u>서울주택도시공사</u>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	<u>서울특별시</u> <u>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도시의 개발·정비, 토지</u>----- ----- <u>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</u> ----- <u>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</u>----- ----- -----. 제2조(경영의 기본원칙) <u>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</u>----- ----- ----- --.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, 제1조(목적) 및 제2조(경영의 기본원칙)의 자구를 수정한 것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